kotra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

월간 monthly

(창간호 통권 제1호) 발행일: 2020년 9월 1일(화) ● KOTRA VIETNAM BUSINESS NEWS

이달의 포커스 뉴스

베트남, 현장에서 인터뷰로 확인한 한국 브랜드 2P
-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가성비가 강점

현장에서 확인한 생산기지 베트남 이전 움직임 3P

베트남 노동법 전면개편, "철저히 준비해야" 20P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2
월간 뉴스 동향 9
프로젝트 동향 14
세무/노무 16
법률 20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꽝닌성> 24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28
아세안지역 거시동향 지표 32
공지사항 및 사업안내 33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

베트남, 현장에서 인터뷰로 확인한 한국 브랜드

- 한국 브랜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가성비가 강점
- 베트남 선매품 시장, 소비 감성 충족할 한국의 브랜드 파워 제고 필요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 소비자들의 한국 화장품, 소매유통상점, 식품·외식 브랜드 인지도 및 인식을 관찰한 전 글에 이어 전자기기, 자동차, 기타 분야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베트남 소비자, 한국 브랜드 어디까지 알고 있나?

① 전자기기: Samsung과 LG 외에도 '소형 주방기기' 한국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 구축

'전자기기 관련 한국 브랜드' 문항에서 최다 호명된 브랜드는 Samsung이었다. Samsung을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이 카메라, 고화질, 사진, 배터리 등의 단어를 언급했으므로 이들이 우선 떠올린 Samsung 제품은 스마트폰이 주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기업은 현재 카메라 단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② 이동수단: 베트남 소비자에게 KIA와 Hyundai는 경제적인 가격의 자동차 브랜드

'이동수단(자동차, 항공사 등) 한국 브랜드'는 응답률이 가장 저조한 동시에 응답자들이 즉답에 곤란함을 표했던 질문이다. (245명 중 185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75.5%) 185개 응답 중에서도 한국 브랜드로 잘못 기재한 응답(Yamaha, SYM, Mazda 등)은 26건으로 화장품, 전자기기, 식품 등의 다른 소비재와 비교해 이동수단 관련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③ 기타

상기 특정 상품 외 설문 참여자들에게 자유롭게 떠오른 한국 브랜드를 묻자 Shinhan bank, CGV, Lotte Cinema에 답변이 집중됐다. 응답자 일부는 K-Pop 영향으로 YG, SM과 같은 한국 연예 기획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시사점

품질 신뢰성은 베트남 소비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들이 한층 성장하기 위해 전과 같이 견고히 다져가야 할 가치이다. 베트남의 경제 및 소비 시장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상품 품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의식 또한 지속 제고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브랜드(선호/실망)경험'에 대한 질의응답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에게 브랜드 호오를 가르는 주요 기준은 상품의 품질이었다. 특정 한국 브랜드를 지목해 개인의 선호를 밝힌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좋은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베트남 소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 상표 상품들이 기능적 측면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선호하지 않거나 실망한 경험이 있는 브랜드에 대해 일부 응답자는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돼 품질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현장에서 확인한 생산기지 베트남 이전 움직임

- 베트남, 차세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 중
-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베트남 제조업 성장에 대한 투자자 기대는 여전

글로벌 금융위기, 미·중 통상분쟁,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제조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안정성과 투자 인센티브 정책,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베트남이 대체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HSBC는 베트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9년 0.5%에서 2019년 1.4%까지 성장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점유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단순조립 가공무역을 제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더해 중국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출생률이 꾸준히 하락하면서(2015년 12.07‰ →2018년 10.94‰) 인건비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등 제조 여건이 악화하기 시작했다.

공단 관계자: "미·중 통상분쟁 격화로 활발해진 중국 내 제조업체의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

중국의 제조 환경 변화로 아세안 국가와 중국 제조업의 수직적 분업체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2018년 미·중 통상분쟁이 시작됐다. 2018년 7월 미국은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2020년 1월 1차 합의안에 서명하기까지 양국은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해 중국 내 제조기업의 관세 부담이 가중됐다.

생산기지 이전 관련 온라인 세미나 참가 및 기업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 현장의 목소리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중국 제조업계가 타격을 입었고 중국산 부품 조달이 불안정해졌다. 이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 와이어링 하네스, 조향장치 같은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현대자동차, 닛산(Nissan) 등 완성차 업체가 생산라인을 일시 중단하게 됐으며 대중의존도가 60% 이상이던 스마트폰 업계도 피해를 입게 됐다. (자료: BOK 이슈노트 No.2020-4 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가 차세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게 됐는데 마자르(Mazars) 회계법인은 지난 8월 5일 '아세안으로의 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Investments and Supply chain pivot to ASEAN countries)'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차세대 아세안 10개국의 강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내수 시장과 무역 연계성을 뽑았다.

시사점

베트남 기획투자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7월 베트남의 FDI 투자 유치 금액은 신고액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했으며, 집행액은 4.1%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코로나19 확산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2020년 3분기 미주, 유럽, 동아시아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아 베트남 제조 환경이 차츰 개선되리라 전망했다. 더욱이 EU-베트남 FTA도 지난 8월 1일 발효돼 베트남 제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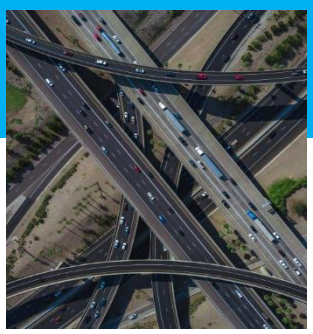

민관합작투자사업(PPP)법 제정을 통해 본 베트남 인프라시장 동향

- 6월 18일, 손실 위험분담제 등 투자환경 개선 내용 포함된 PPP법 국회 통과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PPP 적용 확대로 민간 및 외국투자자 증가 전망

지난 6월 폐막한 제14기 국회 9차 회의에서는 10개의 법률과 21개의 결의안이 승인됐다. 이 중 우리 기업이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 제정으로 작년 5월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년여 만이다.

베트남 정부가 PPP법을 제정한 주요 이유로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을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시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로 보여지며, 이번 PPP법 제정으로 베트남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PPP 비율이 높은 베트남 인프라 시장

베트남 인프라 시장은 2014~2019년 연평균 9.2% 성장했으며, 2019년 시장규모는 약 39억 달러로 2029년까지 약 9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솔루션(FitchSolution)에서 발표한 베트남 인프라 부문의 위험/보상 지수(Risk/Reward Index)는 100점 만점 중 62.72점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건설, 인프라 시장과 향후 다수의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프로젝트 운영과 규제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은 Industry Rewards(산업 보상)부문에서 81.2점을 기록하며 지역 내 4위를 기록했다. 이는 높은 경제 및 인구 성장률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 정부의 대규모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건설, 부동산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은 향후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프라 건설 시장 중 한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인프라 시장 동향

1) 교통·물류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시장은 2020~2029년 5.8%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완공을 앞두고 있거나 추진 중인 주요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은 고속철도 건설, 지방 공항 확장 등이 있다.

2) 에너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진행에 따라 베트남 전력 소비량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전력 소비량은 전년 대비 약 8.9% 증가한 2094억kWh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1인당 전력소비는 2029년까지 60% 이상 증가, 평균 전력소비는 연평균 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전력 소비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민관합작프로젝트(PPP) 활성화 관련 법 통과, 신규 법령과 기존 시행령 비교

- 베트남 국회, PPP 64/2020/QH14, 2021년 1월 1일 발효 예정
- 손실분담제도 도입,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 투자여건 개선 기대

지난 2020년 6월 18일 베트남 정부가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법을 신규 제정 했다. 내년 1월 1일 발효되며 교통, 전력, 정보통신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약 2000억 동(약 한화 104억 원) 이상 드는 사업을 PPP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 위험 분담제도가 도입된다. 이 글에서는 기존 시행령과 신규 제정 법령을 비교하며, 달라진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베트남의 민관 협력사업(PPP)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2030년까지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2000억 미국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참여방식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자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및 2015년 2월 15일 민간투자 관련 시행령인 Decree 15/2015/ND-CP를 제정, 2018년에는 해당 시행령을 Decree 63/2018/ND-CP(Decree 63)으로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2020년 6월 18일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하는 PPP 관련 신규 제정 법률안이 제14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제9차 회의에서 99.7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Law No. 64/2020/QH14)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정의 및 투자 형태

PPP는 프로젝트를 시행·관리·운영하는 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무관청,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PPP 투자 형태는 건설-운영-이전 계약(BOT), 건설-이전-운영 계약(BTO), 건설-이전 계약(BT), 건설-소유-운영 계약(BOO), 건설-이전-임대 계약(BTL), 건설-임대-이전 계약(BLT), 운영-관리 계약(OM)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경쟁, 공정성, 투명성 및 경제적 효율성 보장 원칙 하에 능력, 경력 및 민관합작사업(PPP) 프로젝트 이행에 적격한 투자자를 결정한다.

PPP의 특징과 장·단점

월드뱅크에서 발간한 PPP 가이드북에 따르면 민관 합작투자사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특징을 지닌다.

1)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장기적 계약
2) 공적자산(Public Asset)의 신규 건설과 운영이나 기존 시설의 운영
3) 민간 건설과 운영에 따르는 중대한 리스크와 책임 부담
4) 상당한 금액의 민간부문 투자 (기존 시설의 운영일 경우는 예외)
5) 민간 부문이 받는 보상은 운영 성과나 수요에 연관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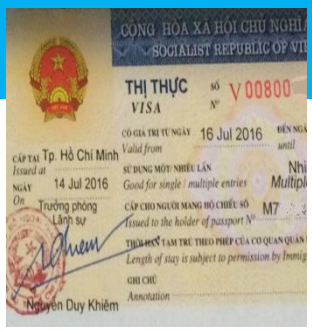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최대 10년 체류 가능

- 7월 1일 시행,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기간 차등
- 불법 비자, 거주증 발급 주의해야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됐다. 기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등에 대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정책을 관광산업을 도모하거나 투자유치책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자비자(E-Visa) 신설

2017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전자비자가 공식 시행된다. 한국을 포함한 80개국 국민은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면 전자비자 신청 대상이 된다. 물론 출입국법상 일반적인 입국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보호자없이 여행하는 14세 미만 아동, 3년 내 강제퇴거(추방)된 경우, 6개월 내 출국명령(Compelled exit)으로 인한 출국한 경우, 건강상 문제를 가진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출입국법 Law No. 47/2014/QH13 제21조)

출국 후 30일 내 다시 입국하는 경우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

종전에는 일방적 무비자의 경우에 최근 베트남 출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비자가 면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하기 위해 3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투자자 비자(DT) 개정

예전 규정에서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등록증(ERC)에 투자자로 이름이 등록된 개인투자자라면 최대 5년까지 비자기간을 인정해 줬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투자자에 대해서 법상 최대기간 5년보다 짧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투자자(자본금 기준 30억 동(VND) 이하, 즉 한화 1억5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 1000억 동(약 50억 원) 혹은 베트남 정부 판단에 의한 투자혜택 분야의 경우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시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

작성일 현재 베트남은 비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 공무 수행자와 베트남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베트남에 이미 입국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뷰티 스파시장 동향

- 소비력을 갖춘 직장 여성이 늘면서 피부관리 수요 역시 가파르게 증가
- 고온다습한 기후에 영향을 받는 베트남인들의 피부 특성에 맞춘 기능성 제품 유망

다낭무역관 자체 조사 결과, 베트남 피부관리숍과 스파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 제품은 주름개선, 여드름, 보습 효과가 있는 겔, 크림, 앰플, 마스크팩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페이셜, 바디마사지에 에센셜 혹은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부관리숍과 스파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 마스크팩 등으로 상품DB정보를 작성하였다.

시장 규모 및 동향

베트남 뷰티 산업은 2015년 15억 3천 5백만 달러 규모에서 2019년 20억 8천4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3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올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9.3% 성장한 22억 7천 6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인들의 고온다습한 기후 특성상 지성피부가 많으며 피지, 모공 확장, 여드름 케어 등에 관심이 높다.

수입규모 및 수입국 동향

베트남의 기초화장품 수입 규모는 2014년 9천 백만 달러 규모에서 2018년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2015년 시작된 베트남 관광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관광객 대상 스파 및 피부관리숍 등이 늘어나며 관련 화장품 수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 동향 및 주요 기업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외국산 브랜드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산 화장품의 점유율과 선호도가 가장 높다. 호치민시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수입 화장품 중 한국산이 3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23%, 일본 17%, 태국이 13%로 뒤를 잇고 있다.

유통구조

베트남 스킨케어 제품의 유통구조는 오프라인 판매(68.1%)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는 12.3%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2023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이며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율 및 규제

베트남에서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HS Code 3304.99.20/30/90으로 분류되며, 관세는 한-베FTA에 따라 4% ~ 8%가 부과된다. 베트남 내 수입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식약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 제품을 등록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화장품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제품 고시 번호(Product Notification No.)를 취득하여야 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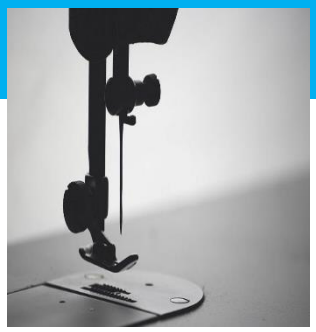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산업 동향

- 주요 수출국 경제 재개 및 전자제품 제조 활성으로 하반기 반등 준비
- 포스트 코로나 속 베트남, 장기적 관점의 성장 기대는 여전

4월 베트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노동 인원 소집이 제한되고 비필수 사업장의 영업이 임시 중단되는 등, 산업 전반에 감산이 불가피했다. 코로나19 강경 대응책 이후 70일 넘게 (해외 유입 외) 내부 감염 사례가 0건에 수렴하자, 베트남 정부는 지역 사회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여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하반기 U자형 반등 준비

2020년 5월 베트남 산업생산지수(IIP)는 4월 대비 11.2% 증가했다. 2019년 5월과 비교해 3.1% 감소한 것이나, 1~5월 IIP 성적을 합산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의 성장을 이뤘다. 또한 IHS Markit이 집계한 베트남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2.7로, 여전히 50 아래 머물렀으나 4월보다는 회복된 모양새다.

베트남 제조·가공 산업 동향

2020년 5월 베트남의 제조·가공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2.8% 증가했다. 올 1~5월 해당 산업의 생산지수는 2019년 대비 2.2% 증가해 평균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이는 2019년 1~5월 제조·가공산업 생산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이처럼 성장이 둔화된 원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국의 발주가 줄어 주요 품목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0년 1~5월 차량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의복은 6.7%, 전자제품은 5.2%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수출과 투자 유입 감소했지만 공단 부지 가격은 증가, 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5개월 간 베트남의 수출 및 FDI 유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저조했다. 4월 강경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이후 베트남에서는 2개월간 국내 바이러스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현지 정부는 비필수 사업 운영과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입국을 허가하는 등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

베트남, EVFTA 다음은 RCEP

지난 8년간의 노력 끝에 EVFTA 발효를 8월에 앞두고 있는 베트남은 다음 목표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체결을 위해 전향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6월 23일,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15개국 통상 장관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 연내 RCEP 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10차 회기간 장관 화상 회의에서, 베트남 통상장관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회원국가들을 대변하여 올해 11월 서명을 목표로 협정의 법적 검토와 협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한편, 6월 RCEP 관련 화상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됐다. 이는 세계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확장에 진취적인 베트남의 행보와 일치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 재경부, 내수 자동차 조립·생산 업체를 위한 세금 납부 유예 추가 결의안 제출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 의 세금납부를 유예해 주는 결의안 84(RESOLUTION 84/NQ-CP)를 시행 한 것에 이어 추가로 국내 자동차 제조 · 조립 업체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주는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함. 이번 연장 안이 체결되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 는 내수 자동차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 시행령이 체결 및 발효 된다면 3월 납기 마감 건은 9월 20 일까지, 4월과 5월 납기 마감 건의 경우 각각 10월 20일과 11 월 20일 까지 연장 될 예정.

또한 하반기 5개월간 징수 예정인 소비세 납부기한은 12월 20일로 연장될 수 있음. 추가 시행령이 발효되더라도 해당 기업 세금 납부 유예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 세금 납부 유예를 원하는 국내 자동차 생산 · 조립 기업은 세금 신고 유예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으로 제출 해야 함.

[THE SAIGON TIMES / 2020. 8. 21.]

▶ 넷플릭스 베트남 , 규제 위기에 직면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되는 영화와 TV시리즈 들이 베트남 정부 규제를 따르기 위한 정밀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밝힘. 지난 4년간 넷플릭스는 정식 사업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상태로 베트남에 TV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해옴. 넷플릭스는 베트남에서 세금회피 문제로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 왔음.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베트남 재정경제부는 국경간 서비스에 대한 특정 세율에 관 한 법률 조항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짐. 베트남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되는 영화와 TV시리즈 들이 베트남 정부 규제를 따르기 위한 정밀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밝힘.

해외 *오버더톱 서비스(OVER THE TOP-OTT) 플랫폼은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고군 분투 중이나 FTP PLAY가 발간하는 Q&ME의 IPTV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력업체 인Q&ME 외에도VTVCAB ON, K+, ZINGTV 등의 국내 IPTV서비스가 베트남 시장의 총 2/3 을 차지할 정도 라고 밝힘. FTP 의 계열사이자 베트남의 대표 IPTV 업체인Q&ME는 약 39%의 점유율로 OTT시장을 주도 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약 23%의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음.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셋톱 박스의 유무를 떠나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명칭

[VIETNAM INVESTMENT REVIEW / 2020. 8. 20.]

▶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25세 미만 청년 실업 문제의 대두

아시아 개발 은행(ADB) 및 국제 노동 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6개 월 이상 지속된다면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이 13.2%에 달할 수 있다고 밝힘. 이는 54 만8천 명이 실직하게 되는 것으로, 전년도 동기(6.9%)의 수치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임.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청년 실업률이 중 · 장년층의 실업률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될 것이며 또한 더 장기적으로 이 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베트남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직물산업으로 전체 실업의 15%를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호텔 및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이 13.6%, 농업이 10.6%를 기록하였음. 올해 2분기 베트남의 15세 이상의 취업 인구는 5천3백10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220만명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동기 대비 240만명이 감소하였음.

[HANOITIMES / 2020. 8. 19.]

▶ 베트남 , 코로나 19 극복 위해 기업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세무조사 완화

베트남 세무총국은 최근 전국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 조사를 통해 미화 1천 160만 달러 이상의 탈루 세금을 징수함. 주 로 부가가치세 환급 과정에서 세금신고 누락 및 축소 사항들이 발 견 되어 적발 됨. 그러나 세무총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완화 혹은 중지 하고 기업들이 생산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세무 부에 지시함. 베트남 세무부는 절차 단축을 위해 세무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벌이는 대신 기업이 세무 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고, 서류검토 후 리스크 징후가 있을 때만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짐.

[VIETNAM NEWS / 2020. 8. 19.]

▶ 일본기업 1400여개 , 베트남으로 생산 확대 검토중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가 3500개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조 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응답기업의 41%인 1400개 기 업이 베트남으로 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고 밝힘. 이는 전년도 조사에 비해 약 5% 증가한 수치임.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중국에 생산기지를 투자했던 일본기업들은 베트남을 비롯한 태국 및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이전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베트남에서 경영하는 71%의 일본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함. 이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이익 전 망에 비해 낮은 수치임.

[THE SAIGON TIMES / 2020. 8. 18.]

▶ 코로나 19 재유행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섬유 ·의류 및 신발 업계

코로나19의 초 유행을 이겨냈던 경험으로 무장한 섬유·의류 및 신 발 제조 기업들은 코로나19의 재유행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확신 함. 섬유·의류 및 신발제조 업계는 코로나19가 각국에서 맹위를 떨 치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이 높아졌으나, 내수시장은 수출의 10%에 불과하며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수출에 집중을 통 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이들은 또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 (EVFTA)을 통해 70% 이상의 관세 인하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함.

[VIETNAM NEWS / 2020. 8. 17.]

▶ 2025년까지 베트남 해외 수출 미화 3천6백억 달러 돌파 예정

산업부의 5개년 사회개발발전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 평균 5% 성장하여 2025년에는 미화 약 3천 4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수입의 경우 연간 4.9% 증가하여 2025년에는 수입규모 미화 약 3천 3백억 달러를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됨. 지역 사업체들의 성장 속도는 연 평균 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산업 부문이 GDP의 35% 이상, 상업 부문은 13.5% 이상을 차지하게 되며, 또한 중소기업의 45%가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The Voice of Vietnam / 2020. 8. 14.]

▶ 코로나 19, 전자상거래 매출 증대에 기여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분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0%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힘. Ipsos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소비자 중 30% 이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식료품점이나 마트에 직접 쇼핑을 가기 보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rab Mart를 우선 사용하여 생필품 및 식료품을 구매하고, 외식 대신 Grab Food, Now, Vietnammm등의 음식 배달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한다고 응답함. 통계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매 분야 매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 3.4% 증가했으며 식품 관련 소매 매출이 7%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힘. 소비자들의 쇼핑 성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이동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은 사업전략을 바꾸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개선하고 온라인 판매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존 전략을 찾고 있음.

[Vietnamnet / 2020. 8. 13.]

▶ 베트남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외국인투자청(FIA)은 올해 상반기 베트남 기업의 해외투자 총액이 미화 2억 2천 26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보다 11.4% 증가했다고 밝힘.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한 반면 국영기업은 해외 투자비율을 줄이고 있음. 베트남 민영기업들은 미국, 호주, 스페인,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에 투자하며 투자 대상국의 다변화를 보인 반면 인접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대한 투자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여전히 GDP의 10%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며, 이는 정부에서 지난 40년간 내수경제 활성화와 다각화를 위해 공공·민영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에 주력하라는 정책을 폈기 때문. FDI 가 활성화 되면 베트남 민영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Vietnamnet / 2020. 8. 12.]

▶ 베트남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 목표 달성, 연말까지 하락 전망

2020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기 대비 4.19% 상승하여 국회가 정한 연간 4%목표를 초과함. 그러나 연말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통계청은6월 유가 상승으로 인해 6.05% 오른 운송 서비스 가격과 1킬로그램당 미화 4.3달러에 달하는 높은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 상승 요인이라 설명함.

[Vietnam Economic News / 2020. 8. 12.]

▶ 에너지 구조조정으로 분주한 베트남의 LNG 시장

수 년간 베트남의 주요 연료는 화석연료였으나, 심각한 공해의 주범이 되는 화석연료 때문에 고민하던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주요 연료를 바꾸는 에너지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임. 정부는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총 에너지의 15~20%, 2040년까지 총 에너지의 25~3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임. 아직까지는 LNG에 대한 정부의 세부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행법상으로는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베트남(PV)가스와 국영 전기회사인 베트남 전력공사(EVN)만이 LNG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해외 자본의 천연 에너지 사업은 아직 인가되지 않은 상태임.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호황이 기대되며 베트남 전역에서 수십 억 달러 규모의 LNG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중임. 미화 60억 달러를 투자한 Chan May LNG와 38억 5천만달러를 투자한 닌 투안 지방의 Ca NA 가스화력 발전사가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Vietnamnet / 2020. 8. 11.]

▶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베트남에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

고화질과 풍부한 독점 콘텐츠 공급으로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Netflix, iFlix, Amazon과 중국의 WeTV, iQ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과 겹쳐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월 이용료가 베트남 현지 인터넷 TV스트리밍 회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프리미엄 해외 컨텐츠 구독 서비스에 지불 할 의사가 있는 기업과 개인 고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이런 해외 업체들은 현행법상 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엄격한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되어 베트남 현지 업체와 비교하면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 베트남의 영화법에는 해외 스트리밍을 통해 확보한 인터넷 및 TV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음. 정부는 베트남에 수입된 해외 스트리밍 업체의 콘텐츠와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여 규제할 계획이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음.

[Saigon Giai Phong English Edition / 2020. 8. 10.]

▶ 베트남 과일·채소류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해져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과일 · 채소류의 해외 수출이 재개됨. 베트남의 과일 · 채소류는 베트남-EU자유무역협정(EVFTA)의 발효로 EU국가에 수출될 때 이익이 증대함. 베트남의 화훼 수출시장은 현재부터 약 6~12개월, 화훼 농가는 3~6개월 내에 이전 수준의 생산량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산업무역부는 과일 · 채소류 수출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검역 과정이 복잡하지만 베트남의 과일 · 채소류의 해외 수출 전망은 밝을 것이라 예상하였음.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으로의 수출은 상반기 미화 9억 610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약 29.1% 감소한 반면, 다른 대형시장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음. 과일 · 채소류의 대 태국 수출액은 미화 6천 8백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233.4% 증가했으며, 대 한국 수출액은 6천 740만달러로 21.8% 증가, 대 미국 수출액은 6천 2백만달러로 6.1% 증가, 대 일본 수출액은 5천770만 달러로 15.5% 증가, 대 네덜란드 수출액은 3천400만달러로 9%의 증가를 각각 기록하였음.

[Vietnamnet / 2020. 8. 7.]

▶ 베트남 해양부, 항만 개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컨테이너 취급 수수료 인상 제안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 항구 통관 시 컨테이너 취급 수수료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짐.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확대와 항만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취급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제고됨에 따라 베트남 해양부는 외국기업들이 항만 투자를 고려할 때 망설이지 않고 재투자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취급 수수료 인상을 제안함.

[Vietnam news / 2020. 8. 6.]

▶ 모바일 뱅킹 트렌드를 잡기 위해 분주한 베트남 은행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은행이나 상점에 직접 방문하기 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으로 지불 결제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은행들이 손을 잡고 전자지갑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 출시를 앞당기는 중임.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QR코드 결제 솔루션, 블루투스 결제, 지문·홍채 스캔 및 생체인식 지불 시스템 등의 발달로 은행과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고객에게 새롭고 편리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출이 증가함.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주던 대출 이자에 기대는 것에서 벗어나 전자상거래 지불 결제 시스템의 수수료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며, 향후 각 은행에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대출 의존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Vietnam News / 2020. 8. 5.]

▶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 (EVFTA) 발효, 지식재산권 보호에 주의해야

8월 1일 발효된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 (EVFTA)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IPR)강화임. 베트남 현행법에 따르면 아직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전문가들은 EVFTA가 수출의 물꼬를 트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됨. EU내에서 높은 비용으로 지식재산권 독점 보호를 위해 등록해야 하나 베트남 기준 법령의 모호함으로 현지 기업들이 등록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산업통상부(MoIT)는 2009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보완 및 개정을 검토 중임.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여러 단체, 개인, 기업가 및 기업이 지식재산권 문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EVFTA가 가져올 가능성은 어려움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 됨.

[The Voice of Vietnam / 2020. 8. 5.]

▶ 취·등록세 인하와 더불어 신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자동차 기업

베트남에서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취·등록세 인하로 인해 가격이 낮아진 국내 조립·생산 차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내 차 조립·생산 업체들은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조립·생산 라인을 풀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짐. 침체 되었던 국내 자동차 업계에 특소세 혜택으로 7월 이후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베트남 내의 자동차 업체들은 10개 이상의 신차 출시 일정을 앞당기고 있음.

현지 자동차 리뷰 업체인 Otofun Forum 운영자는 베트남에서 차량 구입에 대한 수요는 낮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만약 국내 차 조립·생산 업체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펼쳐 소비자에게 다가가면 국내 차 판매 시장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

[Vietnamnet / 2020. 8. 4.]

▶ 산업무역부, 해외 시장에 석유 소매 산업 개방 제안

산업무역부는 가솔린 및 석유 거래에 관한 결의문 83/2014/ND-CP 초안에서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석유 소매시장에 회사 당 최대 35%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함. 지난 2016년 해외 정유업계에 투자 제안을 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으며, 산업 무역부 관계자는 전략 물자인 석유는 국민의 삶과 에너지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유통 참여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함. 위의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승인 된다면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석유 소매 시장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석유 소매 업계가 더 이상 정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해야 함.

[Vientnam News / 2020. 8. 3.]

(입찰정보)

1. Tran Hung Dao 교량 건설 프로젝트

발주처	ㅇ 기관명 : Hanoi Authority of Planning and Investment ㅇ 웹사이트 : http://hapi.gov.vn/ ㅇ 연락처 : 84-24-3734 7605
프로젝트	ㅇ 현장위치 : Hanoi Hoan Kiem, Long Bi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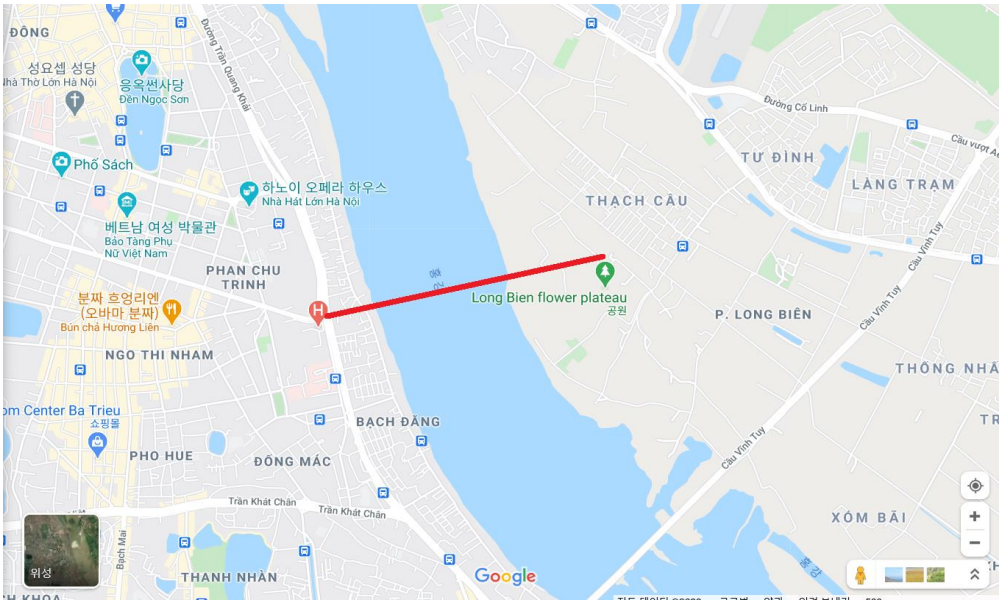 ㅇ 규모 : 약 304백만 달러 ㅇ 프로젝트 재원 : PPP(BT)로 설계되었으나, PPP법 제정으로 발주처자금, ODA, PPP(BOT) 등을 고려 중 ㅇ 프로젝트 단계 : Pre F/S 진행중 (Him Lam JSC, Tedi) ㅇ 입찰예정일 : 2021년 (잠정) ㅇ 세부내용 : - 총 연장 : 6km (교량 2.3km, 남쪽 도로 0.4km, 북쪽 도로 3.3km) - 구간 : Tran Hung Dao, Le Thanh Tong 교차로 → Nguyen Van Linh Road

(입찰정보)

2. 고속도로 60 Dai Ngai 교량 건설 프로젝트

발주처	ㅇ 기관명 : 베트남 교통부 ㅇ 웹사이트 : http://www.mt.gov.vn/ ㅇ 연락처 : 84-24-3941 2700
프로젝트	ㅇ 현장위치 : 베트남 Tra Vinh, Soc Trang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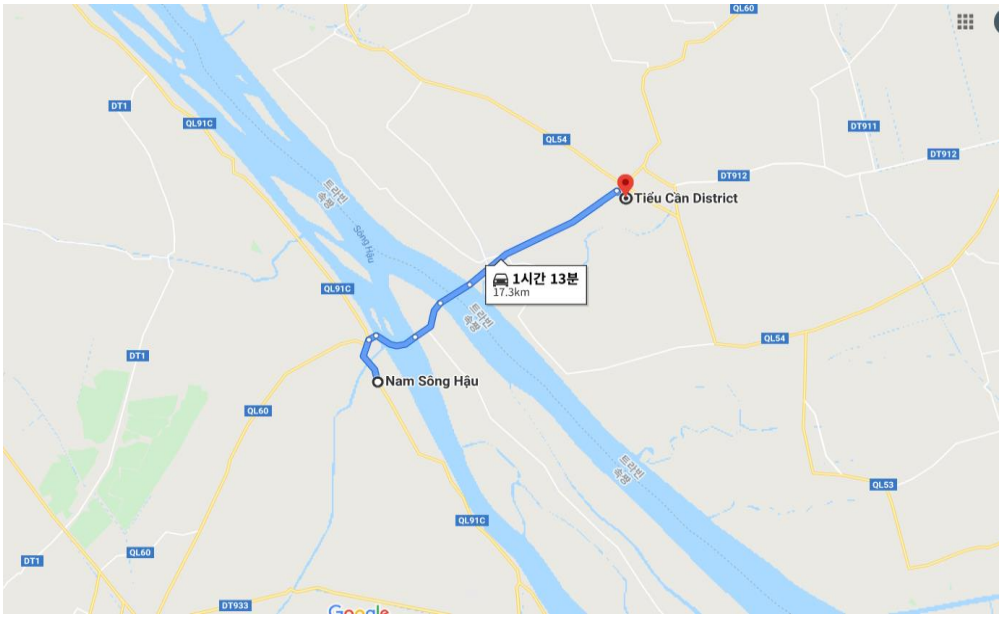 ㅇ 규모 : 약 302백만 달러 ㅇ 프로젝트 재원 : JICA ㅇ 프로젝트 단계 : F/S 준비 - 2019년 10월28일 Pre F/S 완료 ㅇ 사업자 선정 방식 : QCBS ㅇ 입찰예정일 : 2021년 (잠정) ㅇ 세부내용 : - 총 연장 : 15.2km - 시작지점 : Highway 54 at Tieu Can Dist, Tra Vinh Province - 끝지점 : Nam Song Hau Road, Long Phu Dist, Soc Trang Province - 차선 : 4차선 - 설계속도 : 시속 80km/h

*발주처 담당자 정보 등은 KOTRA 하노이무역관으로 별도문의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SEOU VIETNAM ACCOUNTING COMPANY LIMITED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뉴스의 첫번째 기고에 즈음에 금번에는
최근 조세변경사항 및 베트남국세청 예규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0년 법인세 30%감면 결의

2020년 6월 19일자로 베트남국회는 한해 매출액 2,000억동 미만의 회사들에 대한 2020회계연도 법인세 30%감면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결의안은 2020회계연도에 대해 결의일 후 45일후부터 실행됩니다.

· 대상회사: 베트남 법인세법에 근거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회사 및 영리조직이며, 외국법에 근거해 설립된 회사를 제외합니다. 외국법에 근거해 설립된 회사의 정의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이 부존재하나, 베트남내 법인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행위로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외국인계약자나 그에 의해 설립된 Project Management Office는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걸로 해석됩니다. 법인세 감면대상기업으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감면혜택을 적용하므로 종업원수에 상관없이 매출액 2,000억 미만 기업은 감면혜택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손금불산입 조건 변경

2020년 6월 25일자로 총리실은 현행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조건을 규정한Decree 20/2017/ND-CP를 변경한 Decree 68/2020/ND-CP (“Decree 68”)을 공표하였습니다. 과거 Decree 20은 EBITDA(영업이익+감가/감모상각비+이자비용)의 2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모두 사외유출로 당기소멸하는 손금불산입비용으로 간주했습니다. 본사나 투자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도 회사의 이자비용이 비용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자비용부담이 많은 초기설립 적자기업도 손금부인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금번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트남 총리실은 해당 세법규정을 수정하는 Decree 68이 수정 공표하였습니다. 바뀐 Decree 68은 이자비용 손금한도액을 인상하고 손금불산입 비용은 향후 미래년도의 손금한도액의 여유내에서 5년내에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년도에 미사용한 이자비용은 5년내에 향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손금불산입(유보사항)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항목	Decree 20	Decree 68
이자비용항목	이자비용 전부	이자수익을 차감한 순이자비용
이자비용제외항목(항상 비용인정되는 이자비용)	N/A	ODA이자비용, 국가정책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이자
손금산입 허용비율	EBITDA의 20%	EBITDA의 30%
손금불산입금액의 차년도 이월공제	불허용	향후 5년내 이월해서 손금불산입액이 없는 향후년도에 손금으로 인정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변경내용 소급적용	불허용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자비용 재계산 수정신고서 제출 조건부로, FY 2020년을 포함해서 향후 5년내 이월해서 손금불산입액이 없는 향후년도에 손금으로 인정

투자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매입부가세환급 불가

2020년 4월 1일자 국세청은Official Letter No. 1393/TCT-KK를 공표하고 투자허가서(IRC)에 따른 사업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연된 경우엔 매입부가세공제를 부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업자는 IRC상 진행일정을 변경한 후에 매입부가세를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자금의 납입외에도 사업진행일정을 지연한 경우에 납세자의 매입부가세 환급신청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L/C발행시 매출부가세 부과

2020년 4월 22일자 베트남 국세청은 Official Letter no. 1606/TCT-DNLF를 공표하고 L/C발행을 지급대행서비스로 간주하고 매출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국세청입장을 뒤엎고 L/C발행수수료 수령행위를 부가세면제항목인 금융서비스로 간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 인적공제금액 변경

2020년 6월 2일자로 국회는Resolution 954/2020 / UBTVQH14 를 공표하고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항목을 하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본인공제액:11백만동/월
- 부양가족공제:4.4백만동/월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0년 근로소득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2020년도 근로소득세는 한해 전부에 대해 변경된 인적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하게 됩니다.

외국인계약자세 적용대상 확대

2020년 3월 31일자 베트남국세청이 공표한OFFICIAL LETTER NO. 1388/TCT-DNL 에 의하면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내에서 고객사의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대행하는 서비스(결재대금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계약자는 외국인계약자세 납세의무자이며, 베트남소재 고객사는 외국인계약자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외국인계약자에게 대행서비스수수료를 지급시에 5%를 법인세, 5%를 매출부가세를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 본 OL에 근거해서 E-commerce업계에서 활동하는 해외소재 IT 결재대행기관들은 베트남내에서 대행서비스 수수료 수령시 FCT를 부담하고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교육훈련기간동안의 근로세 납부방식 및 중복 근로소득자의 근로세 납부신고

2020년 3월 25일자로 하노이세무서가 공표한 Official Letter no. 14151/CT-TTHT에 의하면 직무교육계약시 피교육자에 대한 근로세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훈련기간동안 회사가 피교육자와 3개월이상의 고용기간을 지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회사는 피교육자 의 근로세를 누진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후 납부합니다.
- 교육훈련기간동안 회사가 피교육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가 2백만동 이상이면, 급여총액에 10% 근로세 단일세율 원천징수합니다. 단, 2백만동 미만은 근로소득세 면제됩니다.
- 2개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복소득자이면,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각각의 고용주가 월별/분기별 예납한후에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개인명의로 자체 신고해야 합니다. 각 고용주는 해당년도의 고용주별 근로세납부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요청 받을 시 매년 발행해야 합니다.

베트남 내 외국인용 비자 정보 : 1. 비자 종류 및 발급대상

- 베트남 방문·거주 목적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는 21가지가 존재한다.
- 베트남내 취업 또는 근무를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는 주로 △DN, △LĐ 비자 등이 있다.
- 근무하는 기업·기관 및 근무자의 지위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가 상이함으로 비자종류별 발급대상을 확인하고 올바른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
- 외국인용 비자 관련 베트남 법령(47/2014/QH13) 세부사항은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1017, 영문 번역본 제공)에서 확인 가능하다.
  * 베트남 출입국법(47/2014/QH13)의 일부 내용은 개정 출입국법(51/2019/QH14)을 통해 개정되었음

연번	비자	발급대상	유효기간
1	NG1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대통령, 국회의장 또는 총리가 초청한 대표단 구성원	방문·근무·거주기간 또는 여권만료일까지
2	NG2	◦베트남 공산당 서기국 상무부, 부통령, 국회 부의장, 부총리,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 대법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또는 주 감사원장이 초청한 대표단 구성원 - 장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 지방의 당위원회 간사가 초청한 대표단원, 지방의 당위원회 간사는 도시를 중앙에서 운영 - 혹은, 지방 인민 위원회와 지방 인민 위원회 위원장은 도시를 중앙에서 운영	방문·근무·거주기간 또는 여권만료일까지
3	NG3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재외공관, 영사실, 대표실, 정부 간 기구 대표실의 구성원 및 구성원의 배우자, 임기 중 함께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 및 가정부 등	방문·근무·거주기간 또는 여권만료일까지
4	NG4	◦외교 공관, 영사관, 유엔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 및 정부 간 대표 기구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및 구성원의 배우자, 구성원의 18세 미만 미성년자 - 외교 사절단, 영사관, 유엔에 소속 된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 및 정부 간 조직(IGO) 대표 사무소 방문자	최대 12개월
5	LV1	◦베트남 중앙위원회 공산당 산하에 있는 부서, 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구성원 - 국회, 정부,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민 위원회, 검찰청, 각 부처, 장관급 기관, 정부 부처 기관, 인민위원회 및 지방 인민위원회는 중앙에서 도시를 운영	최대 12개월
6	LV2	◦사회정치적 단체, 사회단체, 베트남 상공회의소 구성원	최대 12개월
7 ①	LS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변호사	최대 12개월
7 ②	ĐT1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 및 1,000억 VND 이상의 자본 기부금 또는 정부가 결정한 투자 인센티브 대상 부문, 거래 혹은 지역에 투자를 하려는 외부 기관의 대표자	최대 5년
7 ③	ĐT2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 및 500억 VND이상 1000억 VND이하의 자본 기부금 혹은 정부가 결정한 투자 인센티브 대상 부문, 무역 또는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관의 대표자	최대 5년
7 ④	ĐT3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 및 30억 VND 이상 500억 VND이하의 자본 기부금이 있는 외국 기관의 대표자	최대 3년
7 ⑤	ĐT4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 및 30억 VND이하의 자본 기부금이 있는 외국 기관의 대표자	최대 12개월

연번		비자	발급대상	유효기간
8	①	DN1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적 지위를 가진 기업 및 기타 단체의 구성원	최대 12개월
	②	DN2	◦서비스 제공, 상업적 주재를 설립 혹은 베트남이 계약 당사자인 조약 하에서 기타 계약 활동을 수행하는 구성원	최대 12개월
9		NN1	◦베트남의 내의 국제기구 및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 사무소장 또는 프로젝트 대표	최대 12개월
10		NN2	◦베트남 내의 다른 외국 경제, 문화, 전문 기관의 대표 사무소장 혹은 외국 무역업자의 지부장	최대 12개월
11		NN3	◦외국 비정부기구, 외국 무역업자 대표사무소 또는 지부, 베트남의 다른 외국 경제, 문화, 전문기관의 대표사무소의 구성원	최대 12개월
12		DH	◦베트남 내에서 수습직원으로 활동하거나 학업을 위해 오는 외국인	최대 12개월
13		HN	◦회의 및 연수회에 참석 인원	최대 3개월
14		PV1	◦베트남 주재 특파원 및 기자	최대 12개월
15		PV2	◦베트남 내에서 단기간 근무 하는 특파원 및 기자	최대 12개월
16	①	LĐ1	◦베트남이 계약 당사자인 조약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취업 허가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 베트남 내 근무자	최대 2년
	②	LĐ2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취업 허가서를 소지해야 하는 외국인	최대 2년
17		DL	◦관광객	최대 3개월
18		TT	◦LV1, LV2, LS, ĐT1, ĐT2, ĐT3, NN1, NN2, DH, PV1, LĐ1 or LĐ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베트남 국민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외국인	최대 12개월
19		VR	◦친척을 방문하거나 다른 기타 목적으로 찾아오는 외국인	최대 6개월
20		SQ	◦비자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해외 베트남 기관의 장에 의해 승인 ◦시장 조사, 관광, 친척 방문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때 베트남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a. 비자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해외 베트남 기관과 관련하여 근무하고, 주최국 외무부 관할 기관의 서면 요청을 받은 구성원 및 구성원의 배우자와 자녀 b. 주최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이 발급한 외교 보증서를 소지한 자	최대 30일
21		EV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비자 (E-visa) * evisa.xuatnhapcanh.gov.vn ◦E-visa 발급 수수료는 출입국관리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결재 게이트웨이를 통해 납부 ◦E-visa 발급을 허용한 나라 목록 (한국 포함) https://evisa.xuatnhapcanh.gov.vn/documents/20181/117155/Vietnam-Evisa-nation-list.pdf/21e0f88f-d8a0-48b8-bfdb-a0f82b0853e2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18일부터 COVID-19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있거나 최근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E-visa 발급을 잠정 중단	최대 30일

베트남 노동법에 대한 이해 1 – 개정노동법 주요내용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이 재 국 고용노동관
jglee19@mofa.go.kr

세무이슈와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가 인사노무 분야이다. 다만 국·관세 등 세무이슈는 진출로펌의 유료서비스나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상담·지원이 활발한데 비하여, 베트남 노동법을 포함한 인사노무 이슈는 상대적으로 우리기업들의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노무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연재 형식으로 일부 기초적인 내용도 포함하여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이번호는 내년(2021.1.1.)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다음호는 코로나 19 관련 무급휴직 등 우리기업의 대응에 대해, 그 후에는 우리기업들의 주요질의 순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 • •

1. 개정노동법 개정경과 및 향후 일정

내년(2021.1.)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은 작년(2019) 4.28 노동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5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의견수렴 및 국회의 논의를 거쳐 11.20. 의결(12.17 발표)되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법 개정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개정은 완료되어 내년도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금년 하반기에 다수의 관련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노동법 전체 베어 원문, 한글번역본, 영문번역본은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2020.6.1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개정노동법 주요내용

2.1. 월 초과근무시간 확대

현행 노동법과 비교할 때, 정규근로시간과 일 및 연간 초과근무시간 제한은 동일하고, 월 초과근무시간만 확대된다. 즉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라는 정규근로시간과, 1일 12시간 및 년 200(섬유·봉제 등 예외 300)시간이라는 초과근무시간 제한은 동일하고, 월 초과근무시간만 40시간으로 확대(개정노동법 제107조제2항) 된다. 또한 정규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개정노동법 제105조제2항은 “국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1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퇴직 연령 상향

현행 남성 60세, 여성 55세의 퇴직 연령이 남성 62세, 여성은 60세로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남성 3개월, 여성 4개월씩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남성은 2028년에 62세, 여성은 2035년에 60세로 정부 로드맵에 따라 조정(개정노동법 제169조제2항)된다.

2.3. 공휴일과 명절

9.2 건국기념일(독립일) 전후로 휴일 1일이 추가(개정노동법 제112조제1항)되어 베트남 근로자의 공휴일과 명절이 총 11일로 증가한다. 다만 "매년, 실제 상황을 토대로 하여,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휴일을 결정(개정노동법 제112조제3항)"하도록 하여 건국기념일 전날에 쉴 지 아니면 다음날 쉬게 될지는 매년마다 상이할 수 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현행노동법과 동일하게 "베트남의 공휴일과 명절 외에 자국의 전통 설날 1일과 국가공휴일 1일의 휴가를 가지게 되어(개정노동법 제112조제2항)" 베트남 개정노동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공휴일과 명절은 총 12일이 되는 것이다.

2.4. 복수 근로자 대표단체 조직 허용

베트남에서 사실상 기업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따라서 기업 내 근로자단체는 베트남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규정이 적용되는 노동조합과 개정노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근로자 대표단체로 구성되며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대표단체도 쟁의행위 등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함에 있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노동법 제170조 및 제172조) 복수 근로자 대표단체로 인한 현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업 내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같은 구체적 사항은 향후 하위법령에 의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5. 근로계약 형식·종류 등 변화

우선 근로계약 형식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노동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규정 외에 상세규정이 없으나, 개정노동법은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의 명칭은 아니지만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 임금, 사용자의 관리와 감독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로 합의한다면, 그러한 문서는 근로계약으로 간주(제13조제1항)"되고, "전자거래법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체결된 근로계약도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제14조제1항)."

개정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종류는 현행노동법상의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이 제외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가지 종류로 축소(제20조제1항)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추가되고 근로계약의 횟수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법적 효력을 가진 법원의 판결·결정 및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추방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제34조제5항)되고,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양 당사자는 복수의 기한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제151조제2항)."

2.6. 양성평등 관련 조항 추가

개정노동법에는 양성평등 관련 조항이 대폭 추가되었다. 우선 제10장의 표제가 "여성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에서 '여성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및 양성평등 보장"으로 변경되었고,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 추가되었다. 현행노동법에는 임신기능 및 육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여성근로자 사용이 금지되나, 현행노동법에는 남성 및 여성의 구분 없이 노동보훈사회부가 임신기능 및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업무 리스트를 공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노동안전위생의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였다.(제142조)

또한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남성근로자 및 6개월 미만의 입양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도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제139조)

2.7. 그 밖의 주요내용: 임금표,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최저임금제도, 불시 근로감독

먼저 임금표 등의 정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그 설정에 있어 기업의 자율이 확대되었다. 현행노동법상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을 수립하여 현급 국가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개정노동법에 따르면, 기업이 자율적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 국가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없이 사업장에 공개적으로 공표하면 된다(개정노동법 제93조).

둘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의 연장이 1회만 허용된다. 현행노동법은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횟수제한이 없으나 개정노동법에 따라 앞으로는 연장은 1회만 허용되어, 해당 신규노동허가의 효력은 최대 4년(최초 2년+연장 2년)이다(개정노동법 제155조). 다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인 최대 4년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어 귀국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신규노동허가를 받으라는 의미라며,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한다.

셋째,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된다. 국가임금위원회 내에 전문가가 추가되고(제92조), 최저임금 조정 시, 경제성장, 노동생산성, 실업률, 기업 지급능력 등 사회경제 전반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다(개정노동법 제91조).

넷째, 현행노동법에서 삭제되었던 불시 근로감독이 부활하였다.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을 위협하는 위기가 급박한 경우에 권한 있는 자의 결정에 따른 불시 근로감독은 사전 통보를 요하지 않는다."(개정노동법 제91조)

3. 시사점

먼저, 개정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초과근무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정규근로시간 축소가 강하게 제기되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1주 40시간 근무를 권장한다는 법문이 들어간 만큼, 향후 개정에도 초과근무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규근로시간이 축소가 예상된다.

둘째, 베트남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법상으로는 '복수 근로자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단기적으로는 기업현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노사관계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약화가 우려된다.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은 관리직(베트남 기업법에 의할 때, 통상 우리기업의 과장급 이상)인데, 수습기간 증가(기존 60일→180일), 외국인 근로자의 제한없는 계약직을 허용하였다는 점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평가된다.

넷째, 근로감독관의 불시점검이 가능해졌다. 1994년 노동법에서 규정되었으나 현행노동법에서 삭제되었던 불시 근로감독이 개정노동법에서 부활하여 진출기업의 노동 관련 준법경영이 더욱 강조되었다. 노동보훈사회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행사에서, 불시 감독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ILO가 권고하는 근로감독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노동법은 많은 주요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할 예정인데, 우리기업은 이러한 하위법령의 제·개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금년도 10월까지는 개정노동법 규정에 따른 22개의 관련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계획이다. 우리대사관은 주요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내년(2021년)에는 전면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되고 우리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우리대사관은 6월과 7월에 베트남 북부지역과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베트남 노동법 순회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향후 코참·코트라·노사발전재단과 함께, 베트남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베트남 노동법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순회설명회는 대사관과 코참·코트라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미리 공유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베트남 노동법 순회설명회"는 무료특강이므로, 앞으로도 지역, 공단(산업단지), 업종 및 개별기업 등이 희망하는 경우, 부담없이 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84-24-3831-5111)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베트남 노동법 및 인사노무 관련 주요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정책-경제관련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하노이 한인소식]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베트남 북부 유망투자지역 안내, 꽝닌성

□ 꽝닌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6,102.4㎢ ▪ 인구: 1,320,000명('19년) ▪ 도시거주 비율 : 50.3%
지정학적 위치	▪ 하노이로부터 130km, 중국 국경과는 118km의 내륙 운송물류 거점
접근성	▪ 2015년 말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105.5km) 및 10번국도 (하이퐁-하롱베이) 완공으로 하노이 접근성 확대 ▪ Van Don(번돈) 국제공항 및 하롱 국제크루즈 항구 운용
GRDP 성장률 / 1인당 GDP	▪ 전년대비 12.1% 성장('19년) ▪ 성 1인당 GDP : 6,131USD/년, 전년대비 9.7% 성장('19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	▪ 총수출액 : 21.6억 USD / 총수입액 : 19.1억 USD('19년) ▪ 산업별 성장률 : 공업/건설업(13.5%), 서비스업(13.1%), 농수산업(0.6%)
산업구조	▪ 공업/건설업 48.1%, 서비스업 45.8%, 농수산업: 6.1%
노무여건	▪ 성 내 60.3% 노동가능 인구('19년) ▪ 노동 가능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80%('19년) ▪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비율 45%('19년)
최저임금	▪ 하롱 시, 껌파 시, 우옹비, 몽까이 시 :3,920,000VND=168USD(2급지) ▪ 기타지역 및 공단지역: 3,430,00VND=147USD(3급지)
외국인투자 ('20.7월 기준)	▪ 꽝닌성 투자총외국인투자는 136개 프로젝트, 63.2억 달러 ▪ (한국투자) 8개 프로젝트 총 53백만 달러, 한국투자지역 전체(59개) 중 42위

□ 투자 환경

○ 우수한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하이퐁-하롱 고속도로	CAT BI 국제공항 VAN DON 국제공항	하롱-몽까이 국경 고속도로
총 연장 105km 왕복 4차선 최대 속도 120km/h	총 연장 28km 왕복 4차선 시간 : 20분	(Cat Bi 공항) 연 이용 관광객 200만 수화물 처리량 2만 톤 (Van Don 공항) 연 이용 관광객 250만 수화물 처리량 1만 톤	총 연장 150km 왕복 4차선 최대 속도 120km/h

- (도로) 하노이-하이퐁 구간, 하이퐁-하롱 구간의 고속도로 완공으로 하노이-하롱 간 이동시간이 기존 3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단축, 하롱-몽까이 중국 국경 고속도로로 인해 중국과의 육로 운송에 용이함

- (항만) 북부 최대 무역항인 하이퐁 Lach Hyuen항과 연계 가능, 꽝닌성 내 50,000톤 ~ 180,000톤 선박 입항이 가능한 3개의 항만(Cai Lan항, Hon Net-Con을 두고 있음)
- (항공) 2018년 말 꽝닌성 내 Van Don 국제공항을 오픈하였으며, 보잉 777 및 에어버스 A350 급의 이착륙이 가능한 민간, 군사 겸용 공항으로 연간 250만 명의 승객 수송가능 함. 코로나 이전 한국과의 직항노선도 운행하였음

○ 관광 및 풍부한 천연자원
- 2019년 꽝닌성 방문 국내외 관광객은 약 1,400만에 달할 정도로 베트남 최대 관광지이며, 하롱베이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음. Sun그룹, 빈그룹, FLC 등의 참여로 거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상황
- 베트남 생산 석탄 생산량 대부분을 담당(매장량 36억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고령토, 점토, 규사, 석회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천연자원 개발에 유리

○ 경제특구, 공단개발을 통한 경제산업 개발 동력
- 2020년 현재, 8개의 공단이 총리승인을 받아 운영 중으로 전체 면적은 약 1,448ha에 육박, 공단 면적 중 약 30%는 기업 투자활동 중
- 이외 Van Don 경제특구, Mong Cai 국경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중국 인접 최대 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 2010~2020년 7월 간 공단 및 경제특구에 투자된 프로젝트는 총 136개(외투 46개, 내국 90개)이며 총 투자유치 액은 약 52억 달러임

○ 인센티브 정책 지원

구분	투자지역, 분야	법인세/수입세/토지세	감면, 면제 기간
일반 공단	사회경제 낙후지역 투자 시	표준세율 10년 간 17%	최초 2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일반 사회경제지역 투자 시	기본세율 20%	
경제특구	사회경제 낙후지역 투자 시	15년간 표준세율 10%, 이후 20% 기본세율	최초 4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하이테크, R&D 분야, 대형투자 시	최대 30년간 표준세율 10% 적용	
	경제특구 내 교육, 의학, 문화, 스포츠, 환경 등 프로젝트 투자 시	전기간 표준세율 10%	
	경제특구 내 투자를 위한 토지 임차시	토지세 면제	최소 11년 간
공통	고정자산 투자용 설비, 기계수입 시	수입세 면제	
	수출용 재화 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세 면제	5년 간
	일반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할 시	신용 대출 우대 적용	

- 기본적으로 투자지역 및 분야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며 투자기업 성격에 따라 법인세 감면, 원부자재 수입세 면제, 토지세 면제 혜택이 차등 적용됨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 2020년 7월 누계, 꽝닌성 외국투자는 총 136개 프로젝트, 66.4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국으로는 중국(20억 달러, 51개 프로젝트), 싱가포르(5.8억 달러, 8개 프로젝트), 일본(1.4억 달러, 8개 프로젝트), 한국(65백만, 8개 프로젝트) 등임

○ 한국 투자

- 꽝닌성에 총 8개 프로젝트를 투자, 이는 베트남 전체 지역 63개 시성 중 한국기업 지역 투자순위로는 42위에 해당,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범진전자(스피커, 오디오기기 제조), Vina New Tarps(섬유), Dong Nong 농업(농업생산) 등이 있음.

○ 꽝닌성 내 10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1	Mong Dung 2 화력발전소	발전 플랜트(BOT)	미국	21.4억 달러
2	Texhong Hai Ha	섬유, 공단개발	홍콩, 중국	4억 달러
3	Bach Dang 교량 및 교차로	교통인프라(BOT)	일본(15%)/베트남(85%)	3.3억 달러
4	Thang Long 시멘트 공장	시멘트 제조	인도네시아	3.2억 달러
5	Quang Yen 항만 및 공단개발	항만, 공단 인프라	케미먼제도, 싱가포르, 홍콩	3.1억 달러
6	Texhong Ngan Long	원사제조	중국	3억 달러
7	Cai Lan 항구 방파제 건설	항만인프라	미국	1.5억 달러
8	Song Khoai 공단 개발	공단 인프라	싱가포르	1.3억 달러
9	Nam Tien Phong 공단 조성	항만, 공단 인프라	벨기에	1.2억 달러
10	Royal Interntional Hotel	호텔사업	대만, 중국	6.7천만 달러

□ 공단 환경

○ 주요 공단 정보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	주요정보	개발사 홈페이지
Dong Mai IP (동마이 공단)	2008년	167ha	. 토지임대비 : 70USD/㎡ . 관리비 : 0.7USD/㎡/년 . 現활동기업 수 : 9개	www.viglaceraip.com
Hai Yen IP(하이 옌 공단) *경제특구 내 소재	2005년	182ha	. 토지임대비 : 70USD/㎡ . 관리비 : 0.7USD/㎡/년 . 現활동기업 수 : 5개	www.viglaceraip.com
Viet Hung IP (비엣 흥 공단)	2006년	301ha	. 토지임대비 : 1.47USD/㎡/년 . 관리비 : 0.03USD/㎡/년 . 現활동기업 수 : 9개	www.viethungzone.com
Cai Lan IP (까이란 공단)	1997년	78ha	. 토지임대비 : 53USD/㎡ . 관리비 : 0.28USD/㎡/년 . 現활동기업 수 : 33개	www.kland.vn
Nam/Bac Tien Phong IP (남북 띠엔퐁 공단)	2009년	668ha	. 토지임대비 : 85~160USD/㎡ . 관리비 : 1.07USD/㎡/년 . 現활동기업 수 : 2개	www.deepc.vn
Song Khaoi IP (송 코아이 공단)	2018년	485ha	. 토지임대비 : 85USD/㎡ . 관리비 : 1.0USD/㎡/년 . 現활동기업 수 : 0개	www.amata.com
Texhong Hai Ha IP (텍스홍 공단) *경제특구 내 소재	2008년	600ha	. 토지임대비 : 60USD/㎡ . 관리비 : 0.31USD/㎡/년 . 現활동기업 수 : 16개	www.texhong.com
Bach Dang IP (바익당 공단)	2019년	124ha	. 토지임대비 : 미정 . 관리비 : 미정 . 現활동기업 수 : 0개	www.kcnbachdang.com

○ 경제특구

▪ Van Don Economic Zone (번돈 경제특구) - 2007년 정부 총리령으로 개발추진 - 산업단지, 상업단지, 복합관광단지, 물류단지, 항만을 포함한 베트남 북부 최대 경제 특구 지역으로 최근 다수의 프로젝트 진행 중 - 전체 개발비 : 약 74억 달러(~2030년) - 개발면적 : 약 20,000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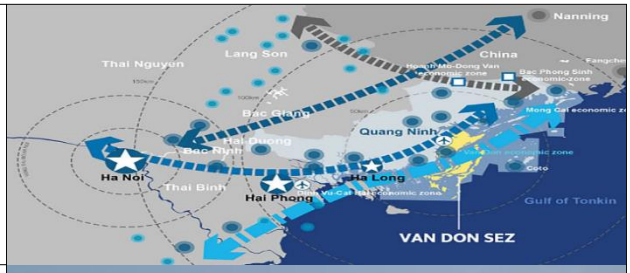
▪ Mong Cai Border gate Economic Zone (몽까이 국경 경제특구) - 2012년 정부 총리령으로 개발추진 - 내륙 운송항구를 중심으로 종합 물류센터 및 국제 상업지구 구성을 위한 계획 구상 중 - 개발면적 : 약 66,000ha	

□ 투자 유망분야

○ 대 중국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제조사
- 꽝닌성 내 Mong Cai 국경 고속도로를 통해 경제특구 및 일반 공단 간 육상 운송 편리, 중국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에 유리, 3국 수출시 인근 하이퐁 항구 이용 가능

○ 경제특구 내 쇼핑몰 및 호텔, 관광 프로젝트
- 경제특구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 가능, 연간 1,400만에 이르는 관광객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 발전 가능성 높음

○ 꽝닌성 한국기업 투자유치 희망분야
- (제조분야) 전자부품 생산, 자동차 부품 생산, 일반 제조업, 하이테크, 친환경 제조
- (관광, 서비스분야) 관광분야 서비스 역량강화 업종, 호텔 및 리조트 운영, 항만 개발, 쇼핑몰, 금융업 분야 등

□ 꽝닌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QUANG NINH INVESTMENT PROMOTION AGENCY 꽝닌성 투자유치 센터	Ms. Vu Thi Kim Chi(부국장)	Tel: +84-33-3533686 Email: ipa@quangninh.gov.vn vuthikimchi.ipa@quangninh.gov.vn Website: www.investinquangninh.vn
QUANG NINH ECONOMIC ZONE AUTHORITY 꽝닌성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Mr. Nguyen Huy Thai(실장)	Tel: +84-203 3832116 Email: nguyenhuythai@quangninh.gov.vn Website: www.qeza.gov.vn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0. 07.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07.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8,859	70,060	421	984	2,827
일 본	4,568	60,223	175	423	1,603
싱가폴	2,544	54,980	139	4,572	6,418
대 만	2,755	33,165	77	809	1,212
버진아일랜드(영)	863	22,252	17	221	408
홍 콩	1,898	24,810	148	784	1,037
중 국	3,032	21,077	237	990	1,704
말레이시아	633	12,766	18	57	134
태 국	578	12,411	19	137	1,587
네덜란드	361	10,309	18	69	361
미 국	1,048	9,335	61	49	161
전체 합계	32,391	380,577	1,620	9,462	18,817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20. 07.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07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4,930	222,326	520	4,323	8,962
2	부동산경영	915	59,756	42	497	2,820
3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	136	27,538	4	4,003	3,952
4	호텔, 외식서비스	882	12,329	43	64	251
5	건설	1,745	13,975	56	47	252
6	도소매,유지보수	4,995	8,268	472	308	1,095
7	물류운수	860	5,162	39	43	146
8	채광	108	4,897	1	0.41	5
9	교육, 양성	561	4,399	33	12	64
10	정보통신	2,279	3,939	141	26	194
11	농,임,수산	501	3,610	6	43	126
12	예술 오락	137	3,391	2	0.91	3
13	기술과학전문	3,415	3,518	209	77	617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78	2,859	2	0.63	10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82	7	4	18
16	행정, 지원 서비스	471	987	36	12	28
17	기타서비스	143	808	3	0.42	5
18	금융, 은행, 보험	76	826	4	0.17	268
19	기타산업					
합계		32,391	380,577	1,620	9,462	18,817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17	2018	2019	2020.07
수 출	2,137.7	2,447.2	2,634.5	1,457.8
수 입	2,111.0	2,375.1	2,535.0	1,393.2
무역수지	26.7	72.1	99.5	65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07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5,085	50,003	51,827	25,655
섬유/직물제품	25,928	30,447	32,571	16,182
전기전자제품/부품	25,882	29,446	35,591	23,071
기계/플랜트 및 부품	12,785	16,528	18,304	12,415
신발류	14,637	16,297	18,299	9,530
수산물	8,353	8,831	8,572	4,384
목제품	7,604	8,855	10,526	6,086
수송수단 및 부품	6,967	7,985	8,500	4,358
철강제품	3,100	4,558	4,160	1,718
채소	3,517	3,822	3,764	1,997
기 타	59,912	67,951	71,337	40,393
합 계	213,770	244,723	263,451	145,78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07
전자제품 및 컴퓨터	33,638	42,501	51,550	32,563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501	33,715	36,640	19,92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182	16,010	14,666	7,071
의류(원단)	11,446	12,914	13,329	6,571
철강제품	9,100	9,896	9,485	2,283
플라스틱 원료	7,355	9,097	9,012	4,560
유류제품	7,006	7,614	1,047	668
기타 금속	5,445	7,317	6,407	3,219
플라스틱 제품	5,408	5,906	6,526	3,859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464	5,741	5,886	2,923
기 타	72,551	86,801	98.960	55,690
합 계	211,096	237,512	253,508	139,32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07
1	미 국	38,464	41,608	47,526	61,347	39,010
2	중 국	21,970	35,463	41,268	41,414	23,162
3	일 본	14,677	16,841	18,851	20,413	10,845
4	한 국	11,419	14,823	18,205	19,720	10,849
5	홍 콩	6,091	7,583	7,955	7,156	5,065
6	네덜란드	6,014	7.106	7,076	6,881	3,834
7	독 일	5,959	6,364	6,869	6,555	3,796
8	인 도	2,688	3,756	6,542	6,674	2,586
9	영 국	4,899	5,424	5,776	5,758	2,669
10	태 국	3,693	4,786	5,494	5,272	2,658
	기 타	60,068	77,115	79,161	82,999	43,133
	합 계	175,942	213,770	244,723	264,189	147,607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07
1	중 국	49,930	58,229	65,438	75,452	42,027
2	한 국	32,034	46,734	47,497	46,935	24,757
3	일 본	15,034	16,592	19,011	19,526	11,049
4	대 만	11,221	12,707	13,228	15,173	8,871
5	미 국	8,708	9,203	12,753	14,365	8,128
6	태 국	8,796	10,495	12,023	11,656	5,877
7	말레이시아	5,114	5,860	7,450	7,291	3,704
8	인도네시아	2,971	3,640	4,918	5,703	2,879
9	싱가포르	4,709	5,301	4,524	4,091	2,133
10	인 도	2,746	3,940	4,147	4,538	2,482
	기 타	31,999	38,395	46,523	48,341	27,306
	합 계	173,262	211,096	237,512	253,071	139,213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07
수 출	32,651(17.6)	47,749(46.3)	48,629(1.8)	48,178(-0.9)	25,347(-7.2)
수 입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1,818(0.3)
무역수지	20,156	31,573	28,997	27,107	13,529

자료원 : KOTIS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6	2017	2018	2019	2020.07
반도체	4,574(59.3)	9,235(101.9)	10,939(18.5)	10,730(-1.9)	6,355(-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12(98.4)	7,367(193.0)	8,909(20.9)	7,970(-10.5)	3,895(2.1)
무선통신기기	5,192(22.2)	3,286(-36.7)	2,632(-19.9)	2,933(11.4)	1,857(15.3)
기구부품	1,722(39.6)	2,612(57.7)	2,332(-10.8)	2,230(-4.4)	1,189(-8.0)
석유제품	1,088(231.2)	1.978(81.0)	1,980(-0.4)	2,194(11.0)	722(-25.8)
합성수지	1,203(8.4)	1,442(19.8)	1,659(15.1)	1,624(-2.1)	872(-7.3)
플라스틱 제품	864(16.9)	1,152(54.9)	1,205(4.6)	1,210(0.4)	632(-10.2)
편직물	1,077(10.3)	1,118(3.8)	1,106(-1.0)	996(-10.0)	459(-22.0)
철강판	820(-2.3)	985(20.1)	1,049(6.5)	1,158(10.4)	600(-9.2)
광학기기	437(56.4)	794(81.7)	944(18.9)	946(0.2)	541(-10.4)
기 타	12,676	18,808	15,874	16,187	8,225
합 계	32,651(17.6)	47,749(46.3)	48,629	48,178(-0.9)	25,347(-7.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6	2017	2018	2019	2020.07
무선통신기기	3,145(113.9)	3,964(26.0)	4,835(21.4)	5,691(17.6)	3,182(2.9)
의류	2,426(9.2)	2,874(17.4)	3,570(24.2)	3,646(2.1)	1,623(-13.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6(-57.4)	604(976.6)	1,137(88.3)	1,197(5.2)	648(-21.4)
신변잡화	642(19.2)	797(24.2)	980(23.1)	1,053(7.4)	647(7.3)
목재류	428(23.1)	511(19.4)	793(55.1)	657(-17.1)	373(-9.5)
컴퓨터	552(38.0)	560(1.4)	534(-4.6)	679(25.9)	558(48.2)
기구부품	268(30.7)	496(89.9)	445(-10.4)	512(15.1)	254(0.1)
산업용 전기기기	287(28.8)	317(10.3)	416(31.1)	479(14.8)	307(13.2)
반도체	123(10.5)	374(203.7)	396(5.8)	471(19.1)	342(75.4)
영상기기	340(126.7)	400(17.7)	329(25.6)	356(-2.0)	243(14.7)
기 타	4,066	5,279	6,197	6,330	3.641
합 계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1,818(0.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19~2020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 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19년(연간)	%	0.7	5.9	4.3	5.02	7.02
		2020년 2Q	%	-12.6	-16.5%	-17.1	-5.32	0.36
		2020년 3Q	%	N/A	N/A	N/A	-0.95	N/A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100	N/A	114.6	148.65	9.1
		2020년 6월	-	98.1	-61.4	114.8	N/A	7
		2020년 7월	-	N/A	N/A	N/A	N/A	1.1
	구매관리자지수 (PMI)	2019년(연간)	-	N/A	51.6	105.2	50.1	N/A
		2020년 6월	-	48	49.7	100.3	39.1	N/A
		2020년 7월	-	50.2	48.4	N/A	46.9	N/A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19년(연간)	-	100	N/A	86.2	124.3	N/A
		2020년 6월	-	99.5	N/A	N/A	83.8	N/A
		2020년 7월	-	N/A	N/A	N/A	86.2*	N/A
	소매판매	2019년(연간)	-	-3.2	N/A	139.5	228.16	11.8
		2020년 6월	-	66.3	1.3	130.4	199.93	5.3
		2020년 7월	-	N/A	N/A	N/A	194.03	4.3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1.0	2.5	0.7	3.03	2.79
		2020년 6월	%	-0.2	2.5	-1.9	1.96	3.17
		2020년 7월	%	N/A	2.7	-1.3	2.5*	3.39
투자	고정자산투자	2019년(연간)	%	1.0	N/A	1.4	4.45	N/A
		2020년 2Q	%	N/A	N/A	-0.7	-2.74	N/A
고용	실업률	2019년(연간)	%	2.3	5.1	3.3	5.28	1.98
		2020년 2Q	%	N/A	17.7%	4.9(6월)	4.99	2.73
		2020년 3Q	%	N/A	N/A	N/A	8.5*	N/A
무역	수출증가율	2019년(연간)	%	-4.2	1.5	-1.7	-7.33	8.1
		2020년 6월	%	-3.6	-13.3	8.8	2.28	-2
		2020년 7월	%	-7.9	N/A	N/A	-9.9	0.3
	수입증가율	2019년(연간)	%	-2.1	-4.8	-3.5	-9.33	7
		2020년 6월	%	-9.9	-24.5	-5.6	-6.36	5.3
		2020년 7월	%	-9.9	N/A	N/A	-32.5	-2.9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전망치는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i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한국산 원단의 EU-베트남 FTA(EVFTA) 특혜규정(역외교차누적) 적용관련 안내 사항

□ EVFTA 특혜규정(역외교차누적) 적용 관련

○ EVFTA 한국산 원단 특혜규정(역외교차누적)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베트남 정부내에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중인 바, 추후 베트남 정부의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 한국산 원단 특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현재 하기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특혜규정(역외교차누적) 적용이 불가하므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라도, EU 수입자가 **EVFTA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므로 주의

-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인보이스 상에 원산지 문구를 자율기재**한 경우라도, EU 수입자에 **추후 EVFTA 협정관세 상당액이 추징**되므로 주의

- 한국 **관세청**에 EVFTA 관련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한국산 원단 **특혜조항은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 적용 불가**

□ 문의처

○ (북부) 하노이 FTA 활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24-3946-0511(620)
- 이메일 : kty5714@kotra.or.kr

○ (남부) 호치민 FTA 활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28-3822-3944(155)
- 이메일 : rainaju27@kotra.or.kr

□ 2020 베트남 진출기업 실태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우리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 희망시 클릭 >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미얀마 정부와 손잡고 2019년 현지합작법인 KMIC(Korea-Myanmar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Co., Ltd.(이하 'KMIC')'를 설립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계 및 공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미얀마 정부와 국민들은 KMIC가 한국기업들의 미얀마 진출 교두보로써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MIC는 식료품가공업, 건설자재업, 의류 · 섬유제조업, 물류창고 및 부품제조 · 조립업종을 대상으로 금년내에 산업단지 분양을 예정하고 있으며, 미얀마 투자절차와 분양관련 상담은 한국의 LH 글로벌상담센터, LH 미얀마사업단 및 미얀마 현지 KMIC 법인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분양상담 : LH 글로벌상담센터,
LH 미얀마사업단(한국) +82 55 922 5953, srjung91@lh.or.kr
KMIC(미얀마 현지) +95 99 7579 9222, gonwoo2@mykmic.com

□ 베트남 개정 노동법 대비 노무세미나 개최 (호치민)

- ㅇ 일시 : 2020.9.11.(금), 14:00 ~ 17:00
- ㅇ 장소 : (오프라인) 롯데레전드 호텔 2층 사파이어룸
  (온라인) Zoom 활용 온라인 세미나
- ㅇ 참석자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100여명
  (오프라인 20여명, 온라인 80여명)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3:30 ~ 14:00	등록	
14:00 ~ 14:05	인사말씀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 본부장
14:05 ~ 14:45	베트남 개정 노동법의 법률적 이해	지평 정정태 변호사
14:45 ~ 15:05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대한상사중재원
15:05 ~ 15:15	KOTRA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안내	KOTRA 호치민무역관
15:15 ~ 15:30	Coffee Break	
15:30 ~ 16:30	베트남 노동법 전반 및 개정노동법 주요내용	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
16:30 ~ 17:00	베트남 개정노동법 대비방안 및 참가기업 Q&A	

ㅇ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 유상철대리
Tel : 028-3822-3944 (Ext. 133) E-mail : ysc@kotra.or.kr

□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GGHK) 개최

- ㅇ 일정 : 2020.9.9.(수)~16(수)
- ㅇ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 ㅇ 주요내용 : 온라인 설명회 및 1:1 상담회 진행
- ㅇ 참가신청 : www.gghk.or.kr 접속 후 참가신청

□ 202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글로벌수요연계형) 참가기업 모집

- ㅇ 목적 : 글로벌수요에 기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GVC참여를 촉진
- ㅇ 지원대상 : 해외글로벌 기업의 수요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국제공동기술 개발 지원
  *해외기업의 기술개발의뢰서 및 구매의향서를 확보한 기업
-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10억원이내 / 년, 최대 3년이내
-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 (www.k-pass.kr)에서 신청
- ㅇ 신청기한 : 2020년 9월 29(화) 18:00시까지

kotra
VIETNAM BUSINESS NEWS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

월간
monthl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